

# 떡볶이 몽테이너

## 정보공개서

유엔아이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8056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8.06.0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9.03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102 호(동내동, 한국메디벤처센터) 유엔아이컴퍼니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053-324-7222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소                                   |              |        |
|---------|---------|------------|--------------------------------------|--------------|--------|
| 유엔아이컴퍼니 | 떡볶이몽테이너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102호(동내동, 한국메디벤처센터)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2018.03.12 | 류건수                                  | 053-324-7222 | -      |
|         |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892-27-00686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양도·양수 여부               | 기업명  | 브랜드     | 양도·양수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회사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 몽테이너 | 떡볶이몽테이너 | 2018.03.12 | 대구 달서구 조암로 41 105호 | 류건수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떡볶이몽테이너 | -     |

|          |                 |                                           |
|----------|-----------------|-------------------------------------------|
| 상 호      | 떡볶이몽테이너 OO 점    |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 또는 건물명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표(서비스표) | 떡볶이몽테이너         | 서비스표 출원번호: -<br>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업표지     | <b>떡볶이 몽테이너</b> | -                                         |

##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 연도 | 2021 년  | 2022 년 | 2023 년 |
|----|---------|--------|--------|
| 합계 | 247,811 | 0      | 0      |

\*당사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써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의 매출액입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직영점 포함)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류건수 | 대표   | 2018.03.12~현재 | 유앤아이컴퍼니 대표 | 회사 업무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유앤아이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18.03~2020.04 | 카페몽테이너(등록번호: 자진취소)이라는 영업표지의 카페사업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일<br>등록일 | 출원번호<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떡볶이 몽테이너<br>(상표권) | -    | -          | -            | -              | 출원 준비 중                     |

\*상기 상표는 출원 준비 중에 있으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표. 가맹본부의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사업 현황

1.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1호점 개점일): 2017년 06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10월 07일)

### 2. [떡볶이몽테이너]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몽테이너    | 떡볶이몽테이너 | 류건수 | 2017.06.01~2018.03.2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41,<br>105호                  |
| 유엔아이컴퍼니 | 떡볶이몽테이너 | 류건수 | 2018.03.21~현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br>102호(동내동,<br>한국메디벤처센터) |

### 3. [떡볶이몽테이너]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떡볶이몽테이너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분식  | 떡볶이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2           | 1   | 1   | 2           | 2   | -   | 2           | 2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2           | 1   | 1   | 2           | 2   | -   | 2           | 2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 년간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3  | -     | -     | 2     | -     | 1  |
| 2022 | 1  | 1     | -     | -     | -     | 2  |
| 2023 | 2  | -     | -     | -     | -     | 2  |

## 6. [떡볶이몽테이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떡볶이몽테이너]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중인 가맹점 수 2 곳 중 1 곳만 POS 매출 조회가 가능하고, 평균 매출액 산출자료가 부족하며, 특정 가맹점 매출액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 지역 | 2023년 말<br>가맹점 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                   | 면적 | 상한               | 면적 | 하한               | 면적 |    |

|    |   | 매출액 | 3.3㎡당 |   | 3.3㎡당 |   | 3.3㎡당 |       |
|----|---|-----|-------|---|-------|---|-------|-------|
| 전체 | 2 | -   | -     | - | -     | - | -     | 산출 불가 |
| 서울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부산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대구 | 2 | -   | -     | - | -     | - | -     | 5곳 미만 |
| 인천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광주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대전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울산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세종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경기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강원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충북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충남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전북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전남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경북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경남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제주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8.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떡볶이몽테이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 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2곳          | 3년 11개월(1,435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떡볶이몽테이너]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 년에 [떡볶이몽테이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지점  | 주소             | 전화번호         |
|---------|-------|----------------|--------------|
| 우리은행    | 상인동지점 | 대구 달서구 월배로 175 | 053-638-6840 |

귀하는 [ 우리은행 ]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우리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설비 등의 종류 및 사양, 점포의 구조 및 노후도 등 내·외부 특성,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가맹비, 교육비

| 구분  | 금액(VAT 포함) | 지급 기한   | 내역                                       | 예치대상 여부 |
|-----|------------|---------|------------------------------------------|---------|
| 가맹비 | 550 만원     | 계약 체결 시 | 가입비(10%), 개점 전 가맹점 운영 정보 제공 및 개점 지원(90%) | 예치      |
| 교육비 | 220 만원     |         |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1~2 인 기준)                 | 예치      |

※가맹비(가입비 일부 제외) 및 교육비는 개점 전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모두 소모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단,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2) 보증금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자제외)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 구분  | 금액(VAT 없음)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예치대상 여부 |
|-----|------------|------------------------------------------------------|------------------------------------------------------|---------|
| 보증금 | 200 만원     | 가맹금 미지급,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 | 예치      |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와 협의 하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 및 담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설정 및 증권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귀하의 계약 이행 및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맹계약 상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이를 즉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VAT 포함) |
|------------|------------|
| 가맹비        | 550 만원     |
| 교육비        | 220 만원     |
| 보증금(VAT없음) | 200 만원     |
| 합계         | 970 만원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만원, VAT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br>82.5 m <sup>2</sup><br>(약 25 평)<br>기준 | 면적<br>3.3 m <sup>2</sup> 당<br>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및<br>반환될 수 없는<br>사유                         | 비고                                                |
|-------|---------------|---------------------------------------------|----------------------------------|------|--------------------------------------------------|---------------------------------------------------|
| 총계    | -             | 7,975                                       | 319                              | -    | -                                                | 매장 상황 및<br>가맹점사업자<br>선택에 따라<br>변동될 수 있는<br>금액은 제외 |
| 인테리어  | (요청시)<br>가맹본부 | 4,950                                       | 198                              | 별도계약 | 당사의<br>귀책사유가 없는<br>한 시공 및 공급<br>이후에는 반환될<br>수 없음 | -                                                 |
| 간판    |               | 330                                         | -                                |      |                                                  | -                                                 |
| 설비/기기 |               | 1,650                                       | 66                               |      |                                                  | 이하 ④참조                                            |
| 집기/비품 |               | 220                                         | -                                |      |                                                  | -                                                 |
| 의탁자 등 |               | 330                                         | -                                |      |                                                  | -                                                 |
| 홍보인쇄물 |               | 110                                         | -                                |      |                                                  | -                                                 |

|      |                    |                                                                                                                               |   |  |                                                   |
|------|--------------------|-------------------------------------------------------------------------------------------------------------------------------|---|--|---------------------------------------------------|
| POS  |                    | 165                                                                                                                           | - |  | -                                                 |
| 초도물품 | (협력업체)             | 220                                                                                                                           | - |  | -                                                 |
| 별도   | 가맹본부<br>또는<br>자체조달 | 간판, 영업 신고, 어닝, 철거비용, 테라스, 사업자 등록<br>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설외, 배관공사,<br>가스/소방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CCTV,<br>화장실, 냉난방기, 외장, 음향, 전화기 등 |   |  | 매장 상황 및<br>가맹점사업자<br>선택에 따라<br>변동될 수 있는<br>금액은 제외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점포 실측 후 귀하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포입지 및 지역, 점포규모, 점포구조,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 등의 사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기 금액 또는 지급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점을 위한 필수설비(인테리어 등)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필수설비를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시공 시작 3 일 전까지 설계도면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하고, 귀하는 시공 매뉴얼 및 도면 점검, 시공 관리감독 등에 대한 기획관리비용으로 [3.3 m<sup>2</sup>당 33 만원(VAT 포함)]을 시공 시작 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비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당사가 귀하와 별도 협의 후 소정의 기획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위 표의 설비/기기/집기 비용은 당사가 권장하는 기본 설치 사양에 대한 금액으로서, 점포 면적의 가감에 따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의 면적당 금액은 이 점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비고                                                      |
|-------|-----------------------------------------------------------------------------------------------------------------------------------|---------------------------------------------------------|
| 가맹희망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등 판단</li> <li>귀하의 책임 하에 최적의 점포 입지를 선정</li> <li>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li> </ul> | 최소 실면적 66 m <sup>2</sup> 이상<br>(단,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상권 및 |

|  |       |                          |
|--|-------|--------------------------|
|  | 있습니다. | 점포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 후 오픈 가능) |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약 기준                                                                                                                     | 계약·교육·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li> <li>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li> </ul>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 교육을 이수한 자, 만 19 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 |
| 종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 실제 운영자(가맹점관리자)인 경우,</li> <li>점주 교육과정 수료,</li> <li>그 외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음</li> </ul> | 만 18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 가맹점사업자의 권한으로 채용할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VAT포함)                   | 지급기한 및 방법                  |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22만원                      | 익월 5일까지 당사에 지급             |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
| 광고/판촉비    | 가맹본부 |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판촉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 |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             |      |                                |                                    |
|-------------|------|--------------------------------|------------------------------------|
|             |      | 제외한 나머지                        |                                    |
| 개점 후<br>교육비 | 가맹본부 | 자세한 내용은 VIII-1을<b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이후에는<br>반환되지 않음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20%                          | 지급 기일의<br>다음날부터<br>지급하는 날까지        |
|             |      |                                |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br>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바로 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차액가맹금은 추정치이며 가맹본부의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이익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5-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금액에는 부동산 임차료, 가맹본부 조직 관리 및 운영, R&D개발비용, 각종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레시피 등 영업매뉴얼 준수여부 및 운영 상태, 대 고객 서비스 제공 상태, 매장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점검/평가 결과 보수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이 운영에 대한 점검 기타 가맹점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정한 직원(Supervisor)이 가맹점으로 방문하였을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내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양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가맹계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기존 가맹계약 상의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위 기간 내에 가맹계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가맹본부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영업표지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하여 당사의 경영적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합니다. 귀하는 영업표지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기존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기존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가맹점의 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교체·교환·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전 영업표지의 철거 및 신규 영업표지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물품대금, 환경개선 등), 계약 상 채무가 있는 경우 양도 전 잔존 채무를 당사에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 후 승인 및 지급 완료가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아래 표의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가맹본부의 운영방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VAT 포함)

| 구분         | 신규 가맹계약 | 구분         | 양수 가맹계약 |
|------------|---------|------------|---------|
| 가맹비        | 550 만원  | 개점활동 지원비   | 330 만원  |
| 교육비        | 220 만원  | 교육비        | 220 만원  |
| 보증금(VAT없음) | 200 만원  | 보증금(VAT없음) | 200 만원  |
| 합계         | 970 만원  | 합계         | 750 만원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귀하는 [떡볶이몽테이너]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영업표지(간판, 로고가 들어간 일체의 시설집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내 지역정보, 전화번호 등록, 홍보사이트(블로그, SNS 게시물 등)를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본 철거비용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귀하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물품공급대금, 위약금 등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운영매뉴얼, 기타 당사가 제공한 영업관련 자산 일체) 및 당사의 소유물 또는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 및 비용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물품 및 관련설비 등에 대해 당사에 인수·반품·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훼손, 유통기한,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⑥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사의 가맹점·가맹점사업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떡볶이몽테이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공급업체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하자, A/S 등의 사항은 전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떡볶이몽테이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메뉴)·용역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귀하가 지정된 상품(메뉴)·용역 외의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 시 귀하에게 안내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기타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귀하에게 기존 상품(메뉴)·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 등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사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품 공급이 중단된 당사의 가맹점 또는 당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

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떡볶이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분식업 | 떡볶이몽테이너     | 해당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 설정방법             |
|-------------|-----------------------------------------------------------------------|------------------|
| 특수상권일 경우    | 특수상권 내                                                                | 계약체결 시<br>지도로 표시 |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상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br>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300m를 원칙으로 함<br>(해당 지역 내 특수상권 제외) |                  |

\*강남역/홍대/명동/동성로/해운대 등에 준하는 대형상권,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푸드코트,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집합매장 내 등의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고객니즈 반영,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성에 따라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 포함)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판매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고객니즈 반영,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성에 따라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 포함)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2023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100                     | 0       | 0             | 0      |

\*가맹점 자체 포스 사용 등으로 매출액 조회가 불가하여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산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해당 항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100          | 0           |

##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기간 및 갱신 기간

① [떡볶이몽테이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귀하의 영업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3)의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계약 조문: 29 조 2 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
| 1. "을"이 본 가맹계약서 제25조(물품 공급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 2. "을"이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갑"과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 매뉴얼 미 준수 및 가맹점 관리감독 규정 등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 7. "을"이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 8.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련 계약조문: 30조 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즉시 해지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⑧ 귀하가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관련 계약조문: 30조 4항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 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 개월 이내) → '양도의 확정'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도의 확정' 전까지 양도인은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채무(물품대금·로열티 등의 미납금) 및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금액 등)을 가맹본부에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양도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②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③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양수인이 당사와 동종의 직영점 또는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⑤ 기타 양수인이 [떡볶이몽테이너]를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아래 표의 제한기간 동안 귀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종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한기간                        | 제한업종               | 제한지역    |
|-----------------------------|--------------------|---------|
| 계약기간 내 및<br>계약해지 또는 종료 후 1년 | 떡볶이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분식업 | 국내 전 지역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떡볶이몽테이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1:00~23:00 | 주 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
| 3 명      | 직접 근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Quality(서비스의 표준화) |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
| Service(서비스)      |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
| Cleanliness(청결)   |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절차                                                    |
|----|-----------------------------|------|-------|---------------------------------------------------------|
| 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     | -                                                       |
|    | 개별광고                        | -    | 100%  |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    | 전국광고                        | 50%  | 50%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 광고 시행(전체 가맹점사업자 참여) |
|    | 브랜드광고<br>브랜드<br>광고<br>+ 가맹점 |      |       |                                                         |

|    |                |   |      |                                                                                                            |
|----|----------------|---|------|------------------------------------------------------------------------------------------------------------|
|    | 모집광고           |   |      |                                                                                                            |
| 판촉 | 전국 및 지역별<br>판촉 |   |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br>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br>판촉 시행(전체 가맹점사업자 참여)<br>단, 동의율 70% 미만 시 동의한<br>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판촉 시행 |
|    | 개별판촉           | - | 100% |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br>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br>승인여부 통지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1)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당사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 유출할 수 없습니다.

2)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은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당사 영업비밀의 범위                                                                                               | 무단유출 시                                                          |
|-----------------------------------------------------------------------------------------------------------|-----------------------------------------------------------------|
|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 매뉴얼 등 당사가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 일체의 영업관련 자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31 조의 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1 일당 [ 30 만원 ]의 지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로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 가맹금을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그 나머지를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 해약요청일자                                 | 위약금        |
|----------------------------------------|------------|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 100만원      |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한 24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     | 200만원      |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맹점 개점 전까지 | 300만원      |
| 개점 관련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 실제 발생비용 전액 |

③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해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영업일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평균 월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15일이 남은 잔여 계약기간인 경우 11개월로 계산)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귀하가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지 않고 가맹점을 폐업처리하거나, [떡볶이몽테이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점포를 양도한 경우 당사에 위약벌 [ 1,000 만원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귀하가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 위약벌 [ 3,000만원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영업노하우를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 당사에 위약벌 [ 3,000만원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귀하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필수품목 및 당사가 별도 통지한 요구품목)을 자점매입 또는 다른 곳에 유통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자점매입하여 상품(메뉴)으로 판매할 경우 당사에 위약벌 [ 500만원 ]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당사 또는 귀하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와 정보공개서에 임원으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 ⑩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 40~50일<br>(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기간 제외)                       | IV-1-1)~4)참고 |
| 가맹희망자<br>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14일<br>(정보공개서의 경우,<br>변호사or가맹거래사의<br>자문을 받은 경우<br>7일) |              |
| 사업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br>-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br>-가맹금 예치                                   | 2일                                                    |              |
| 점포실측 및<br>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br>-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20~25일                                                |              |
| 교육실시           | 운영 및 서비스 교육<br>(공사기간 중 실시)                           | 귀하와 협의한<br>교육기간                                       |              |
| 영업기기/<br>집기 입고 | -냉장고 등 주방기기 입고<br>-그릇 등 주방집기 입고                      | 2일                                                    |              |
| 초도물품 입고        | -식자재, 비품 등 입고                                        | 1일                                                    |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br>-판촉 및 홍보이벤트<br>-예치가맹금 수령                    |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기타 시장상황 등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점포환경<br>개선사유       |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5 년으로 한다)<br>②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항목 | ①간판교체비용<br>②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비율 |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br>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완료 후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br>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br><분할지급 시 절차><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

|      |                                                                                                                                              |
|------|----------------------------------------------------------------------------------------------------------------------------------------------|
|      |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비고   | 장비·집기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 하지 않음                                                                                                                |
| 협의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본부의 권유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점포환경 개선 시행</li> <li>가맹점사업자의 신청 → 가맹본부의 검토 및 승인(서면 회신) → 점포환경 개선 시행</li> </ul>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
| 가맹본부<br>필요 시   | 계약이행, 표준화,<br>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br>운영과 관련된<br>경영지도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br>가맹점에 방문 → 경영활성화를<br>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br>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에<br>서면, 방문 또는 유선 등의<br>방법으로 개선방안 지도 및 시정<br>권고 → 개선사항 시정 | 가맹본부<br>부담<br>(단, 개선에<br>소요되는<br>비용은<br>가맹점 부담)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계약이행, 표준화,<br>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br>운영과 관련된<br>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br>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br>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br>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 가맹점<br>부담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떡볶이몽테이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br>및 장소                | 최소시간                      | 비용                | 필수여부               |
|-----------------------|--------------------|-----------------------------|---------------------------|-------------------|--------------------|
| 신규 교육<br>(개점 전)       | 개점 전에 필요한<br>제반 교육 | 실습교육<br>(지정 교육장)            | (상호 협의 하에<br>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초<br>가맹비에<br>포함  | 필수                 |
|                       | 개점 전 조리/<br>서비스 교육 |                             |                           | 220만원<br>(VAT 포함) |                    |
| 특별/기타<br>교육<br>(개점 후) | 신메뉴 조리방법<br>등      | 집체교육 or<br>S/V를 통한 개별<br>교육 | 메뉴에 따라 상이                 | 실비                | 신메뉴<br>개발 시,<br>필수 |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직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가 신메뉴 개발 시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신메뉴 또는 신서비스에 대한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 -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중인 [떡볶이몽테이너] 직영점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

**[별첨01] 필수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02] 메뉴 및 판매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03] 재무자료(2021~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부 사업자(2020~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영점 사업자(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